

의안번호	2208111
의 퇴 인	송재봉의원
회 답 일	2025. 4. 4.
추계번호	25A0848

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 공공거래시스템의 설치, 통합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전담기관 지정, 심의위원회 설치, 기술인력의 수급동향조사, 기술개발 지원 등을 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18억 5,000만원(연평균 23억 7,000원)이상으로 추계됨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
 - 이에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사용후 배터리 공공거래시스템의 설치(안 제11조)	2,300	-	-	-	-	2,300	460
배터리 통합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(안 제23조 및 제24조)	-	2,300	2,100	1,900	550	6,850	1,370
사용후배터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(안 제30조)	10	10	10	10	10	50	10
배터리 기술인력의 수급동향조사(안 제35조)	150	150	150	150	150	750	150
기술개발 지원(안 제36조)	380	380	380	380	380	1,900	380
합 계	2,840	2,840	2,640	2,440	1,090	11,850	2,370

주: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1조 (사용후 배터리 공공 거래 시스템의 설치)	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용후 배터리의 원활한 거래 및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거래·취득·처분 등을 지원하는 사용후 배터리 공공 거래 시스템을 설치·운영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음(제1항) 1. 사용후 배터리의 소규모 또는 일회성 거래 2. 연구개발 등 비영리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후 배터리의 취득 3.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운행하였던 전기자동차에서 탈거한 사용후 배터리의 처분 4. 침수, 파손 또는 화재 등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어려운 사용후 배터리의 처분 5. 그 밖에 사용후 배터리 거래의 공정성,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 거래시스템 운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2	안 제16조 (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운송·보관 지원)	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 및 사용후 배터리의 원활한 시장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용후 배터리에 관한 운송 및 보관 사업을 공급망안정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음(제1항)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행정적·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 1. 국내 보관 시설 및 운송 인프라 구축 2. 안정적인 사용후 배터리의 운송 및 보관을 위한 인증·실증 3. 공급망안정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 개선 4. 그 밖에 제30조에 따른 사용후배터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	재량규정
3	안 제22조 (표준화 사업)	국가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경제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사용후 배터리의 분리, 보관, 운송 및 평가 등 단계별 표준 개발을 위한 연구 및 보급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국가는 재제조 또는 재사용 배터리의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를 위한 제품 표준 개발을 위한 연구 및 보급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(제2항) 국가는 국내에서 개발되거나 개발 중에 있는 사용후 배터리 또는 관련 기술이 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으로 공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(제3항) 국가는 사용후 배터리 또는 관련 기술이 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가표준과 국제표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관련 연구를 지원할 수 있음(제4항)	
4	안 제23조 (배터리 통합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)	산업통상자원부장관,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전주기(全週期) 이력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전기자동차 배터리 통합이력관리 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·운영할 수 있음(제1항) 1.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제조자 및 제조일자·지역, 원료 구성 및 형태 등 일반 정보 2.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충전상태 기록내역, 사고·수리 및 교환 이력 등 사용이력 정보 3. 사용후 배터리를 전기자동차에서 분리한 사용후 배터리 유형과 외관상태 등 취득 정보 4. 사용후 배터리 거래의 참여자, 거래일, 거래 단가 및 물량, 거래 대상의 잔존가치 평가 결과 등 거래 정보 5.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·재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검사 결과, 일반정보 및 기본 성능 정보 등 재제조·재사용 정보 6. 사용후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경우 해당 사용후 배터리의 재활용 일자, 재활용 원료 명칭·무게, 폐기물 처리 결과 등 재활용 정보 7. 그 밖에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통합이력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정보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5	안 제24조 (배터리 통합이력관리시스템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)	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합이력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관리할 기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음(제1항)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통합이력관리시스템 전담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함(제2항) 1. 통합이력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정보의 보호 및 관리 2. 제23조제2항에 따른 등록 주체에 대하여 미등록 및 오류 정보 등의 시정 요청 3. 제25조에 따른 정보공개의 청구 접수 및 통지 등 행정 지원 4. 통합이력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정보를 활용한 국내 배터리 공급망 분석 및 정책 제언 5. 통합이력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산정보 저장·처리 장치의 유지 및 보수 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이력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업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통합이력관리시스템 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6	안 제30조 (사용후배터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	사용후 배터리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, 사용후 배터리 거래에 관한 분쟁의 조정 및 사용후 배터리 관리사업자 등록 요건 심의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사용후배터리심의위원회를 둠(제1항)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(제2항)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산업 및 공정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함(제3항)	의무규정
7	안 제34조 (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후 배터리의 재제조, 재사용 및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활용사업자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	재량규정
8	안제35조 (배터리 기술인력의 수급동향조사)	국가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포함한 배터리 산업 전반에 대한 기술인력 수급동향 조사를 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국가는 기술인력의 수급동향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, 대학 등 교육기관은 이를 활용하여 학생 정원 운영 등에 반영할 수 있음(제2항)	
9	안제36조 (기술개발 지원)	국가는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보관·운송, 효율적인 활용, 배터리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한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 1. 연구개발사업 2. 국내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·분석 3. 기업, 대학,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·단체 간의 공동 연구개발사업 4. 그 밖에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및 배터리 핵심 광물 등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국가는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사용후 배터리 관리사업자 및 제16조에 따른 공급망안정사업의 추진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, 사업자간 기술 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며, 기술의 상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 공급, 세제·금융 지원, 우선구매, 신기술·신제품 인증 등 다양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음(제2항) 국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국가기술개발사업 및 민간기술개발의 성과에 대하여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(제3항)	재량규정
10	안 제37조 (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)	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사용후 배터리 및 배터리 핵심광물 등 분야의 지식재산 등 기술의 이전·공유·활용 및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·기술적·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(제1항) 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.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.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하여 배터리 분야 연구 성과물을 보유한 대학 등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터리 연구·기술개발 관련 기관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국가는 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) 1. 시제품의 제작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출연 또는 투자·융자 등의 금융지원 2. 지식재산권의 출원, 등록,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(해당 업무의 위탁 및 그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 3. 그 밖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																					
1	안 제11조 (사용후 배터리 공공 거래시스템의 설치)	○	—																					
2	안 제16조 (공급망 안정화를 위 한 운송·보관 지원)	×	－ 현 시점에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운송·보관에 관한 사업 에 관한 내용 및 지원 규모가 구체적이지 않아 합리적으로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기 어려움 － 참고로, 공급망안정화 지원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‘소부장공급망안전종합지원사업’을 수행하고 있음 <table><tr><th rowspan="2">세부사업명</th><th rowspan="2">내역사업명</th><th colspan="3">예산(단위:백만원)</th></tr><tr><th>2023</th><th>2024</th><th>2025</th></tr><tr><td rowspan="3">소부장공급망 안정종합지원</td><td>수입선다변화</td><td>460</td><td>780</td><td>3,811</td></tr><tr><td>공급망건설팅</td><td>500</td><td>500</td><td>300</td></tr><tr><td>글로벌공급망정보분석</td><td>621</td><td>621</td><td>436</td></tr></table>	세부사업명	내역사업명	예산(단위:백만원)			2023	2024	2025	소부장공급망 안정종합지원	수입선다변화	460	780	3,811	공급망건설팅	500	500	300	글로벌공급망정보분석	621	621	436
세부사업명	내역사업명	예산(단위:백만원)																						
		2023	2024	2025																				
소부장공급망 안정종합지원	수입선다변화	460	780	3,811																				
	공급망건설팅	500	500	300																				
	글로벌공급망정보분석	621	621	436																				
3	안 제22조 (표준화 사업)	×	－ 개정안으로 인해 표준화 관련 사업 규모가 확대될 수 있 으나,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사업 확대 규모 및 지원 기준 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에 한계가 있음 － 다만 유사 사업 사례로, “친환경선박전환대응 미세먼지 저감성능 평가기반구축”사업 중 내역사업으로, 표준화 관련 지원 사업 예산은 아래와 같음 :선박 시험인증평가 방안 마련 및 표준화 (’24년) 2,870백만원 (’25년) 1,670백만원																					

4	안 제23조 (배터리 통합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)	○	—
	안 제24조 (배터리통합이력관리시스템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)		
5	안 제30조 (사용후배터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	○	—
6	안 제34조 (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)	×	- 국세 및 지방세 감면의 대상 및 규모, 기준 등을 현시점에서 예측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어려움
7	안 제35조 (배터리 기술인력의 수급동향조사)	○	—
8	안 제36조 (기술개발 지원)	○	—
9	안 제37조 (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)	×	-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행정적·기술적·재정적 지원으로 인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사업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움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-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사용후 배터리 공공거래시스템의 설치(안 제11조)

- 안 제11조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 공공거래시스템의 설치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현행 사업¹⁾ 및 중기재정계획을 활용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함
 -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으로 배터리 거래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전기차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고도화 사업(3171-411) 내 정보화전략계획(ISP) 수립에 2025년 기준 475백만원이 기 편성되어 있음
 - 산업통상자원부의 중기재정계획을 고려하여 시스템 구축, 실태조사, 인건비 등으로 2026년 2,300백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가정함
 - 시스템 구축비용 2,000백만원, 협의체 운영 및 실태조사 50백만원, 전담인력 인건비 250백만원 등 총 2,3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- 제정안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 공공거래시스템을 설치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23억원으로 예상됨

[표 2] 사용후 배터리 공공거래시스템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사용후 배터리 공공거래시스템의 설치	2,300	-	-	-	-	2,300	46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배터리 통합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전담기관 지정(안 제23조 및 제24조)

- 안 제23조의 추계 대상은 통합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전담기관 지정에 따른 비용으로 하며, 산업통상자원부의 중기재정계획을 활용하여 추계함
 - 통합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전담기관 지정에 관해서 부처별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포털 개설과 시스템 고도화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출함

1) 산업통상자원부의 상세 추진계획은 [참고자료 1]에 제시함

- 세부 항목에는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, 협의체 운영 및 실태조사, 전담인력 인건비가 포함됨

[표 3] 배터리 통합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전담기관 지정에 따른 사업별 추가재정소요
(단위: 백만원)

	통합이력관리시스템 구축	통합포털 고도화 1차	통합포털 고도화 2차
시스템 구축·고도화	1,700	1,500	1,300
시스템 유지보수	300	300	300
협의체운영 및 실태조사	50	50	50
전담인력 인건비	250	250	250
합계	2,300	2,100	1,900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- 안 제11조의 공공거래시스템 설치 이후 안 제23조의 부처별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반영하여 추계함
 - 2026년 공공거래시스템을 설치한 이후 2027~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통합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를 실시하고, 그 이후인 2030년에는 시스템 유지 보수(300백만원) 및 전담인력 인건비(250백만원)가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
- 제정안에 따라 배터리 통합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할 경우,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68억 5,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
[표 4] 배터리 통합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전담기관 지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배터리 통합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전담기관 지정	-	2,300	2,100	1,900	550	6,850	1,37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사용후 배터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(안 제30조)

- 비용추계 대상은 사용후 배터리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, 민간위원의 회의 참석수당과 경상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함
 - 위원회는 민간위원 8인으로 구성하고, 분기별 1회씩 연간 4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
 - 회의참석비는 1인당 20만원²⁾이며, 회의당 회의자료, 인쇄물 배포 등 1회당 90만원의 경상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
 - 회의참석비(8인×20만원×4회=640만원)+경상경비(90만원×4회=360만원) = 1,000만원
- 제정안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 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5,000만원으로 예상됨

[표 5] 사용후 배터리 심의위원회 운영 비용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사용후 배터리 심의위원회	10	10	10	10	10	50	1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라. 배터리 기술인력의 수급동향조사(안 제35조)

- 안 제35조에 따른 추계 대상은 유사성 높은 실태조사 사례의 예산을 참조하여 추계함
 - 유사용역 사례인 ‘중소벤처기업 외국인력 수급 실태조사’의 용역비를 고려하여 매년 1억 5,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
 -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외국인력 수급 실태조사 용역으로 2025년 기준 약 146백만원이 소요됨

2) 기획재정부 “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”에 근거

○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,000원내,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,000원내로 편성

- 제정안에 따라 배터리 기술인력의 수급동향조사를 실시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약 7억 5,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
[표 6] 배터리 기술인력의 수급동향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배터리 기술인력의 수급동향조사	150	150	150	150	150	750	15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마. 기술개발 지원(안 제36조)

- 안 제36조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 비용은 유사 사업인 국토교통부의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계획을 참고하여 산출함
- 현재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에 한해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, 개정안의 전기자동차 외의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대해 2025~2028년 총 19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어 이를 준용하여 매년 38억원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가정함
- 제정안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 기술개발을 지원할 경우, 향후 5년간 총 1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
[표 7] 기술개발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기술개발지원	380	380	380	380	380	1,900	38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 결과는 재량지출성 재정수반요인으로 부처의 중기재정계획을 고려하여 관련 예산이 편성됨을 가정하고 관련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하였으므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서영빈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서영빈	02-6788-4653	ybin@assembly.go.kr

1. 추진 배경

-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향후 사용후 배터리 발생량 급증 전망*
 - * 글로벌 사용후 배터리 시장 ' 27년까지 연평균 31.8% 성장 전망(PwC)
 - 사용후 배터리는 재제조, 재사용, 재활용 등 활용처*가 다양하나, 경제적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리체계는 부재
 - * (재제조) 사용후 배터리를 수리해 전기차용 배터리 다시 사용
(재사용) 수리된 사용후 배터리를 전기차 외의 용도(ESS, 드론 등)로 사용
(재활용) 사용후 배터리를 파쇄해 리튬, 니켈 등 유가금속을 추출·회수
 - 또한,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표준화된 운송 및 보관 기준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부재
- '24.07월,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·제도·인프라 구축방안 마련

< 부처 합동 「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·제도·인프라 구축방안」 中
(경제관계장관회의, '24.07) >

- ❶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, 공급망 안정화 등 통합적·체계적 정책추진을 위해 「^{가칭}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정('24)
 -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등 배터리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신설 제도 규정
 - ❷ 사용후 배터리 시장 및 산업 활성화, 통상규제 대응, 사용후 배터리의 무단폐기 방지 등을 위해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('24~'27)
 - ^{1단계}부처별(산업부, 국토부, 환경부 등) 소관에 따른 개별 시스템 구축('24~'26) → ^{2단계}개별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포털 개설('27)

3)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

2. 사업 개요

- (사업내용) 배터리 이력정보를 축적하는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「정보화 전략계획(ISP)」을 수립('25)하고, 본격 구축('26~'27) 및 운영('28~)
- (사업기간) '25년 ~ '29년(5년간)
- (사업규모) 총 85억원(잠정)
- (시행주체) 민간(유관기관, 협회 등)

3. 주요 내용

- 통합이력관리시스템 고도화 단계별 계획
 - (1단계) 배터리 전주기 단계에서 사용후 배터리의 거래, 재사용 사업자 관리 등 관리체계가 부재한 단계에 대한 시스템 구축
 - (2단계) 전기차 운행·폐차 및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(국토부),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(환경부) 등 타 부처 시스템과의 연계 추진